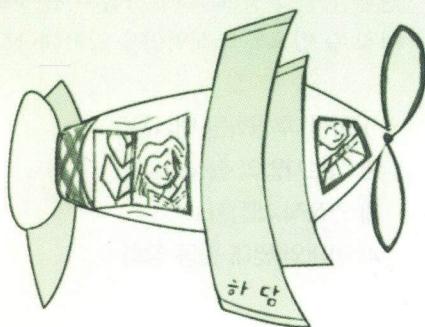


# 나눔터

2004·봄

제46호



2 ● 2004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 ● 여는글

4 ● 뭔다! 상담소

8 ● 여기는 상담실 | 2003년도 상담현황

16 ● 열림터 이야기 | 열림터를 떠나며...

18 ● 하담이야기 | 하담비행은 시작되었습니다.

20 ● 나눔터 기획Ⅰ | 성폭력 특별법,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26 ● 나눔터 기획Ⅱ | 성폭력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가-1회 생존자 대화를 마치고

31 ● 나눔터 학술Ⅰ | 강간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남성중심적 사고

38 ● 나눔터 학술Ⅱ | 치통과 성폭력 고통 - '성폭력의 기준'에 대한 단상

43 ● 나눔터 인터뷰 | 200만원의 끝나지 않은 여행

45 ● 이웃집 놀라기 | 새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자립지지공동체

47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반갑습니다. 열린 마음의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49 ● 서평 |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51 ● 성문화 돌아보기 | <여섯 개의 시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53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사무전화 (02)338-2890~2 • 팩스 (02)338-7122 • E-Mail : ksvrc@korea.com

• 전화상담 : (02)338-5801~2 성폭력 피해 생존자 단기보호시설 열림터 입소문의 (02)338-3562/Fax (02)338-1007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입소문의 (02)338-3563

• 인터넷상담 : ksvrc@chol.com • 홈페이지 : <http://www.sisters.or.kr>

# 2004년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1. 성폭력 피해 생존자 지원체계 강화

본 상담소는 언제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지난 13년간의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생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1) 사건지원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 2) 사건지원자, 생존자 주변인을 위한 매뉴얼 북 발간
- 3)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 대회 개최
- 4)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 5) 성폭력 관련 판례 모니터링
- 6) 성폭력 관련 법담론 연구 및 출판
- 7) 생존자 자립공동체 – ‘하남’ 개소 및 운영의 안정화
- 8) 열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성폭력피해 지원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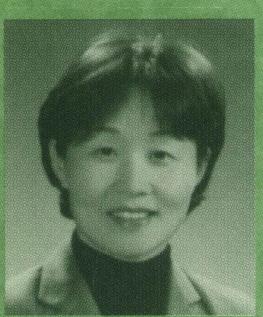
### 2. 조직역량 강화

비영리, 비정부기구로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본 상담소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올해에는 본 상담소의 활동을 국내외연대활동과 인터넷과 다양한 회원모임 등을 통해 보다 가깝고 활기차게 함께 만들 어길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 1) 회원, 후원회원 배가운동
- 2) 정보사업의 활성화
- 3) 안정적 재정확보
- 4) 국내외 연대 활동 강화



본 상담소에서는 2004년 사업목표로 생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본 상담소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진은 2004년 3월 4일 3·8 여성의 날 맞이 성폭력특별법 10주년 기념행사 “성폭력 뛰어넘기” 행사를 끝내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

## 새봄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상담소는 여러분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신 덕에 생존자들의 든든한 지원자로, 그리고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바꿔가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5000여회의 상담활동은 물론, 상담소 개소 때부터 하고자 했던 생존자 말하기 대회나 성폭력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일지 분석을 통한 2차피해 연구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진행되어 다소 과중한 일정으로 힘은 들었어도 한편으로는 크게 힘을 낼 수 있었던 한 해였던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소중한 가치와 활동을 담아낸 6권의 자료집이 발간되어 우리의 활동을 외부와 공유할 수 있고, 기록으로도 잘 보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상담소가 개소한지 만 13년, 이제 바야흐로 청소년기 시대를 시작하고있습니다. 이제 정말 길게 호흡하며,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찾아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은 좀계는 우리 상담소의 역사이지만, 넓게는 우리나라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2004년 우리 상담소는 생존자 지원체계 강화와 조직역량 강화를 활동목표로 정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열림터도 개소한지 10년이 되었고, 또 그동안 열림터 식구들이 퇴소할 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생존자 자립공동체인 중간집 “하담”을 개소하게 되어 더욱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소의 온 가족이 이 운동의 의의와 보람, 사명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다양한 참여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올 봄엔 회원 한마당 축제로 봄 소풍과 스터디모임, 등산모임, 영화감상모임 등 다양한 회원소모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NGO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과 비판, 제언활동, 그리고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열림터와 하담의 식구들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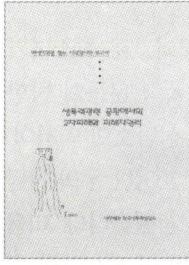
여러분들의 지혜와 참여, 격려에 힘입어 올해도 행복하게 활동해 가겠습니다.



# 된다! 상담소

##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피해와

### 피해자 권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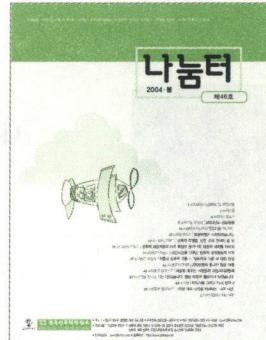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2차피해의 실태를 지적하고, 피해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랍니다. (10/3)

본 상담소 법정지원청의 공동작업인 이 책은 부록으로 공단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침해와 권리보장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실었습니다.

## 법조인 성의식 실태조사 결과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표지사진 :**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지지 공동체  
하담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since 2004. 3)



법조계 관련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인들의 성의식,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1/10)

## 중학생 대상 성교육 워크샵

"중학생 아이들과 '성'으로 즐겁게 만나기"를 주제로 참여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60여명의 성교육 강사, 보건교사,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즐겁고 열띤 분위기로 참여하셨답니다.(11/15~16, 24~25)

## 제 1회 생존자 밀하기 대회

전국의 생존자들과 그 주변인들, 상담원, 학생 등 130여명이 함께 모여,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말하기가 갖는 치유의 힘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1/29)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성폭력예방애니메이션 제작

재미있게 보며 배우는 성폭력예방교육 ~! ^ 경기도청 연구사업으로 초등학교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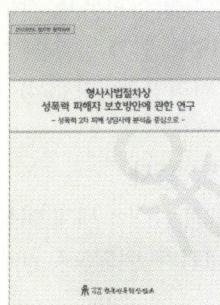
학년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12/5)

### 상담소 한해보내기



상담소 상담원 선생님, 회원분들, 이사님们都 60여명이 참석하여 2003년 한해를 돌아보고 2004년 상담소 활동을 기약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한해 동안 보여주신 애정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12/19)

###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니다.(12/20)

법무부 용역사업으로 2년간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형사처벌법상의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살펴보고,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 남성 서포터즈 웹사이트 오픈

성폭력 근절에 함께 하는 남성 서포터즈들의 이야기와 남성적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www.stoprapebymen.com](http://www.stoprapebyme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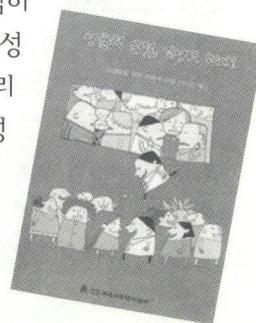
가 오픈되었습니다. 많이 들려주세요~!  
(12/21)

###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성폭력 근절, 남성도 뛴다!』발간

성폭력 근절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반남성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변의 일상적 성폭력과 성폭력적 문화들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 북입니다.(12/26)



### 교원징계재심위 앞 시위

최근 징계재심위가 가해교수의 권리구제

# 뛴다! 상담소

수단으로 약용됨에 따라, 서울시립대 교수 성폭력 사건관련, 재심위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1/19)

## 상담소 총회



회원분들과 함께 2003년 활동을 꼼꼼히 돌아보고, 2004년의 활기찬 계획과 의지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회원분들이 질문 하나, 의견 하나가 저희에겐 큰 격려이고 힘이랍니다. 올해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1/30)

## 2월 월례포럼

정명희 선생님의 '아동성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스런 말하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회원분들과 외부 선생님들의 참여가 매우 높아, 본 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12)

## 네띠앙 엔터테인먼트사 항의방문 및 시위

여성의 몸을 남성적 시선에서 대상화시키며 소비시키는 누드 상업주의의 가장

극단적 모습이었던 위안부 누드 프로젝트. 이에 분노하며, 이를 추진한 네띠앙 엔터테인먼트사에 항의방문 및 시위를 가졌습니다.(2/16)

## 서울행정법원 판결 관련, 여성부 항소 촉구 시위

술 따르기 강요에 대한 여성부 성희롱 결정을 서울 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상담소의 의견 및 여성부의 항소 촉구 집회를 가지고, 여성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2/26)

## 가부장을 뛰어넘자~!

3·8 세계여성의 날과 성폭력특별법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10년 동안 이전과 지금, 변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부장을 상징하는 줄을 여럿이 함께 발맞추어 뛰어넘어 보는 신나는 자리였습니다.(3/4)

## 3. 8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올해로 96주년을 맞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가 여의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3/7)

## 하담 개소식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쉼터에서 자립하여 나가기까지, 그 중간집 역할을 해줄 자립 공간 하담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담고, 닦는다는 의미의 하담 개소식은 풍

성하고 따뜻한 축하와 기원의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답니다. (3/16)

### 탄핵반대 광화문 촛불행사

국민의 민생과 여론을 무시하고, 오직 정치



적 이해 타산 속에 의회 다수의 횡포로서 이루어진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의 무효와 반민주성을 규탄하는 광화문 촛불문화제에 본 상담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13부터 계속)

### 등산소모임

소박한 산사람들이 뭉쳤습니다! ‘웰빙이 별건가요?’라는 문구에 작은 미소가 절로 벙긋 나오게 되는 등산 소모임이 북 한산과 도봉산을 다녀왔습니다. 산과 상 담소를 사랑하는 회원분들이시라면 언제든지 이 소박하고 건강한 웰빙에 동참해

주세요~! ^^(3/14)

### 600차 수요집회

일본 대사관 앞에서 13년 동안을 매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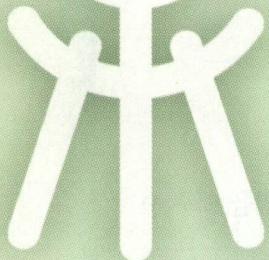
요일마다 600차례 계속해 오고 계신, 할머니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와 힘에 존경을 보내는 자리이자, 이 당연한 요구가 13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3/17)

### 3월 월례포럼

‘성폭력의 기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이란 주제 하에 본 상담소 연구소장인 변혜정 선생님이 발제하였습니다. 모두 고민을 하고 있던 주제이니만큼 반성폭력 활동가들이 모여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3/25)





## 2003년도 상담현황

본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 1. 전체상담현황

2003년에는 총 3,135건(4,871회)의 상담이 접수되어 2002년 3,533건(4,877회)과 비교하여 398건(11.3%)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이를 전년도 대비 하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상담 건수는 작년보다 11.3%의 감소율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상담회수 6회(0.1%), 성폭력관련 상담 122건(4.1%)의 미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지속상담이 전체상담의 1,736회(35.6%)로 전년도 1,344(27.6%)보다 8%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03년에는 전체상담 비율 중 90.6%(2,839건)가 성폭력관련 상담이 차지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 도	상담회수	상담건수	성폭력상담건수
1991 · 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총	44,674	30,378	3,620 (77.8%)

해 본 상담소가 여느 해보다 성폭력전담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2003년 상담현황

###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2003년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2,742건(96.6%), 남성 90건(3.2%), 남, 여 5건(0.2%), 미상 2건 순이며, 연령별로는 성인 1,739건(61.3%), 청소년 454건(16%), 어린이 367건(12.9%), 유아 235건(8.3%), 미상 4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 중 '남, 여'로 분류된 것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비디오방이나 숙박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사례의 경우를 이에 분류하였다.

<표2> 2003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 건(%)

연령별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 계
여	1,698 (59.8)	429 (15.1)	346 (12.2)	227 (8)	42 (1.5)	2,742 (96.6)
남	39 (1.5)	23 (0.8)	21 (0.7)	7 (0.2)	0	90 (3.2)
남·여	2	2	0	1	0	5 (0.2)
미상	0	0	0	0	2	2
총계	1,739 (61.3)	454 (16)	367 (12.9)	235 (8.3)	44 (1.5)	2,839 (100)

###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1,110건(39.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여전히 성폭력 피해 중 성추행 피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2년 피해유형별 분포 중 성추행 비율은 1,196건(40.4%)이며, 본 상담소 통계를 통해 살펴볼 때, 매년 전체 성폭력상담의 40% 정도가 성추행피해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강간 991건(34.9%), 성희롱 396건(13.9%), 강간미수 121건(4.3%),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순으로 나타난다. 성폭력피해유형 중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것은 미상 18건, 간접성폭력피해 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성폭력은 신문, 방송뉴스 등에서 다루어지는 성폭력사건보도나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을 접하게 되어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사례라 할 수 있다.

&lt;표3&gt; 2003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유형 계	강간				강 간 미 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기타
	단 순 강 간	특 수 강 간	강 간 치 상	강 간 상							
2,839 (100)	774 (27.3)	111 (3.9)	106 (3.7)	121 (4.3)	1,110 (39.1)	396 (13.9)	75 (2.6)	22 (0.8)	96 (3.4)	28 (1)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피해 상담을 가해자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2,774건(97.8%), 여성 52건(1.8%), 남녀 5건(0.1), 미상 8건(0.3%)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남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2,335건(82.3%), 청소년 274건(9.6%), 어린이 74건(2.6%), 유아 43건(1.5%), 미상 113건(4%)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성인 2,252건(76.1%), 청소년 311건(10.5%), 어린이 102건(3.4%), 유아 24건(0.8%), 미상 272건(9.2%)에 비해 성인 가해자에 의한 사례가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미상으로 파악되지 않은 가해자 연령이 2003년도에는 4%로 줄어들어 성인에 의한 가해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2,238건(78.8%), 모르는 사람 497건(17.5%), 미상 104건(3.7%)의 분포를 보여 성폭력 가해자의 75%

&lt;표4&gt; 2003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 건(%)

연령별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 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2 (1.5)		6 (0.2)		4 (0.1)		0		0		52 (1.8)
남		2,288 (80.7)		268 (9.4)		70 (2.5)		43 (1.5)		105 (3.7)	2,774 (97.8)
남·여	4 (0.1)		0		0		1		1		5 (0.1)
미상		1		0		0		0		7 (0.3)	8 (0.3)
총계		2,335 (82.3)		274 (9.6)		74 (2.6)		43 (1.5)		113 (4)	2,839 (100)

이상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 관계가 669건(23.5%)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학원 내 342건(12%), 친족, 친/인척 316건(11.1%), 동네사람 175건(6.2%), 친밀한 관계 162건(5.7%)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상담소는 예년과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전·현 데이트상대나 동거인, 남편을 친밀한 관계로 분류하였으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미상에 속하지 않은 경우를 기타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관계(317건/11.2%)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인의 친분을 이용하여 가해를 하는 경우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친구, 친인척(남편, 부모, 이모 등)과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인터넷 동호회원간 또는 산악모임 등의 친목모임 관계 내에서의 피해가 18건(0.6%)으로 이는 전년도(2건)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동호회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앞으로 동호회원간의 피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된다.

**<표5> 피해자/가해자**

아는 사람 2,238(78.8)											단위 : 건(%)		
근친 316(11.1)		직장 내	친밀한 관계	채팅/ 소개로 만나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기 타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23.5)	(5.7)	(4.8)	(6.2)	(3.8)	(0.5)	(12)	(11.2)	(17.5)	(3.7)	(100)	
166	150	669	162	137	175	107	13	342	317	497	104	2,839	

### 3. 2003년 성폭력관련 동향

#### 1)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집중

본 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한 2003년 어린이성폭력 상담건수는 602건(21.2%)으로 2002년 672건(22.7%)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3년은 여느 해보다 어린이성폭력 사건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한 해였다. 이는 2003년 5월 어린이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 거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실질적으로 <표6>과 같이 관련 보도가 2배 이상 증가한 5월부터 8월까지 상담 건수 또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인해 어린이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한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지원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관련기관에서 검토, 발표되

&lt;표6&gt; 2003년 월별 어린이성폭력피해 상담 건수/보도 회수

단위 : 건(%)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담 건수	47	47	38	38	68	74	68	68	39	51	35	39
보도 회수	-	-	-	50	107	91	72	62	40	-	-	-

\*보도회수 : 일간지에 보도된 회수(KINDS '아동성폭력'으로 검색한 결과 : 중복보도 포함)

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2004년도에는 어린이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갖춘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칭)를 건립할 예정이다. 어린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경·검찰·정부의 시도와 이후 계획들은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변화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경·검찰·정부의 이후 조처들이 어린이피해자들을 위한 실제적 지원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개별피해자, 개별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발생과 해결을 위한 구조적 관점을 견지해야한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칭)는 일시적인 사회 관심과 요구의 고조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친 통합적인 성폭력지원센터로서 피해어린이를 위한 즉각 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가해자 측 변호사에 의한 2차 가해 문제 심각

성폭력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내고 가해자를 처벌 수단으로 법적 해결을 선택함으로서 겪게 되는 또 다른 피해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위로와 지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부당한 법적 문제를 겪게 되는 2차 피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중 40%~45% 정도가 법적 문의에 따른 정보 제공임을 알 수 있다. 이중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는 20% 이상이며, 실질적 고소건수는 전체상담 중 14.9% (422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 중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처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적진행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노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 가능하게 한다.

실제 2003년 상담에서 나타난 가해자 측 변호사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관행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상담사례를 통해 그 피해를 살펴보면,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입원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재학중인 피해자의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탐문하고 법정에 증인 출두한 피해자에게 위증죄 운운하며 역고소의 협박을 한 사

례, 피해자 증인진술로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외모와 행실을 윤운하고 피해자의 과거 남자교제관계까지 거론하며 성폭력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의 질문을 한 사례 등이다.

이러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적정한 규정이나 징계조치가 필요한데, 현실은 전무한 상황이다. 형사소송규칙 제 74조에 증인신문방법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그것의 위반 시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고 단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하여 신문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인데, 그 경계가 모호하여 특별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변호사 윤리규정에도 구체적 규정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2차 가해에 대한 기준과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3) 새로운 문화형태에 따른 피해 발생

새로운 여가문화와 신기술의 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본 상담소 2003년 상담 중 찜질방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건수는 24건으로 2002년 7건에 비해 3.4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디지털카메라의 대중적인 보급과 카메라폰의 등장으로 공중화장실, 사무실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이용촬영피해도 2002년 7건에서 2003년 22건으로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담사례를 통해 본 피해실태는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 찜질방에서 성추행 피해가 있은 후 가해자를 잡기 위해 찜질방 주인에게 협조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후,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오히려 영업방해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또 피해자 몰래 찍은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나 관련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례, 직장상사가 복사중인 여직원의 하반신을 찍은 사례, 직장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 한 여직원들이 직장상사에게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알고보니 직장상사가 범인으로 밝혀져 회사에 정식으로 가해자의 퇴사조치를 요청한 사례, 교내 샤워실 내 탈의실에 외부사람이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한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우연히 인지하더라도 인터넷 유포를 할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심각한 프라이버시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얼마 전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플레쉬 기능이나 목욕탕, 수영장 등의 반입금지조치는 제외되고 단지 신호음 장치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렇듯 업주나 기업의 상업적 이익 추구로 인해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도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그 피해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의 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규제조치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품개발이나 영업허가 시 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적 규제조치와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

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이보다 먼저 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업주와 기업 또한 정부의 예민한 인권 감수성이 요구되어진다.

#### 4) 직장 내 이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피해

2003년 피해유형별 현황을 성희롱 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396건(13.9%) 성폭력피해 상담 총 2,839건을 100%로 할 경우의 성희롱 피해 중 직장 내 관계에 의한 피해는 241건(8.5%)이며, 직장 내 이외 관계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155건(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피해자와 가해자관계로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46건(1.6%),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택시기사, 은행원, 의사 등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피해 21건(0.7%), 교육자 15건(0.5%), 그밖에 기타관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피해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는 현실에서 제한적인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직장 내 관계에 의한 피해만이 구제 가능한 실정이라 직장 이외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기대하고 법의 구제를 신청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해당조항은 현행법상 모욕죄, 풍기문란죄, 협박죄 등이나 경범죄 수준의 벌금형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성폭력 개념을 재정립하지 않은 채, 기존 관련 법안 중 성폭력 관련 죄의 열거로 만들어진 법·제도의 한계와 맞닿아 있어 법제도의 개선과 구체적 범죄 행위중심의 성폭력 개념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폭 넓은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모든 피해유형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사회 저변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전환과 대응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성희롱 바라보기가 뒤따라야 한다.

#### 5)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정황검사비(의료비)지원 정책

200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정황검사비(의료비)지원 정책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정황검사비(의료비)지원 예산과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도입시기인 2000년 대비 2002년과 2003년 각각 4배와 7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용 비율의 증가로 인해 2003년 국정조사 당시 의료비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그 결과 2004년도 의료비 예

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9% 감소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2003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 및 (2003년 9월 26일 금.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기사참조.)

불용 비율이 감소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의료비지원책에 대한 장기 계획과 실질적인 고민부족에 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성폭력상담소에 관련자료(병원영수증, 통장사본 등) 송부 후, 후불 지원받는 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본 상담소에서는 의료비 무료지원을 안내했음에도 본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지원을 거부한 사례들이 있다.

둘째,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미비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집행하는 각 상담소와 지자체 담당자 모두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다름으로 인한 차등지원으로 인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본 상담소의 경우, 지원금액의 한계를 지정했던 상반기와 지원한계를 두지 않았던 하반기의 지원회수와 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 2003년도 본 상담소 의료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23회/ 5,137,200원, 하반기 53회/ 31,055,980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비지원시스템에 대한 홍보미비를 들 수 있다. 현재 상담소와 병원에서 상당부분의 지원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담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전혀 인지하는 바가 없었으며, 이미 알고 있던 경우는 병원에서 안내를 받은 경우로 파악된다. 따라서 의료비지원에 대한 불용비율의 증가로 인한 지원시스템의 실효성을 거론하기 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부에서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말에 여성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서류를 최소화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시·군·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정병원도 재정비하는 중이라 한다. 따라서 2004년에는 의료비 지원 정책이 개선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담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후불지원 받는 현행 시스템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치료비 전액 지원을 근간으로 피해 직후, 방문하게 되는 병원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한번에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도입도 필요하다.



## 열림터를 떠나며...



illustred by may

봄 향기가 그윽할 때쯤 열림터를 찾았었는데 벌써 옷깃을 여미는 추운 겨울이 되었네요.

열림터를 나와 혼자 지내다 보니 벌써부터 심심하기도하고 집이 떠나갈 듯이 크게 웃으며 놀던 아이들이 그리워 지네요. ^ ^ 열림터에 있으면서 생겨났던 일들은 정말 셀 수도 없고 잊지도 못하죠.

정말 힘들 때 들어와서 처음 보는 아이들과 생활을 하는 건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쉽지 않잖아요.

괜한 반항심만 생기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라는 생각만 하고. 그러면 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언니로써 또는 그냥 나로써의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번도 언니 역할 동생 역할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밥을 차려준다면 가 준비물 하나를 챙겨준다면 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죠.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감을 얻은 것 같아요.

또 안정된 생활을 하다보니 제 페이스도 찾아가는 것 같았구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 저것 배워보기도 하고 공부해 보기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죠.

잘 해야 된다는 부담이 오히려 저에게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는 거였거든요.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그랬던 게 저한테는 많이 꺼려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건 애들이 창피해서도 아니고 부끄러워서도 아닌데 그냥 “성폭력 쉼터”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괜한 조바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채지나 않을까 아니면 벌써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들...

저뿐만 아니라 한번 씩은 다 느껴봄직한 일인 것 같아요. 잘못은 없지만 괜히 움츠리게 되는거... 예전에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좀 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물론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해도 부끄럽진 않아요. 얼마 전에 한해 보내기 행사에 쓸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꼈죠.

정말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많은데도 편집을 하고 또 괜찮은지 조언을 들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1, 2, 3, 4, 5, 6, 7, 8 ..... 9개월이 걸렸죠.

정말 보이는 것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렇게 드러냈던 것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얘기하는 것 하나 하나가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혹시나 예전에 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말을 하지만 정말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엄마처럼 언니처럼 제 뒷 이상으로 대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정말 크게 한번 집나가겠다며 외박하고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 말 않고 꼭 손을 잡아주셨던 일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사회복지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처럼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배웠구요, 많이 느꼈답니다.

제가 변화했듯이 다른 아이들도 더 성숙해 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들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애들이니까 다른 곳을 가더라도 행여나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 글을 쓰면서 딱 열립터를 떠올려 봤는데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제멋대로인 자세를 하고 쉴 새 없이 떠들면서 선생님과 같이 박장대소 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열립터를 아는 모든 분들도 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지금도 말없이 그냥 찾아가면 웃음으로 받아줄 것만 같은 곳... 저는 열립터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힘든 일 좋은 일 다 같이 해오면서 쌓였던 음... 그 뭐랄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보이지 않으니까 끊을 수도 없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것이요...

다 같이 그 선을 잡고 가까이에 있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고 지탱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해요.

이제 다들 각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낯선 곳이라 해도 새로운 만남을 즐기고 또 관계를 이어나가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열립터는 떠났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면서 너무 설레 인답니다.

자주 찾아가야 하는데 제 큰 욕심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가질 못하고 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성공해서 선생님들의 바람과 믿음을 깨지 않는 사람이 될게요.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기운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마지막으로요 선생님들. 자기건강도 좀챙기세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걱정하는 그런 것도 좋지

만요 건강과 자신도 좀챙기셔야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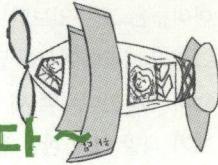
항상 웃음이 깃드는 열립터 되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2003년 12월 19일

지야 (열립터 전입소자)



## 하담비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만 접수되는 성폭력 상담은 작년 한해 2,389건이며, 그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316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2004년 3월 현재 전국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고작 14개소~ 일개 상담소에 접수되는 피해자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많은 피해 여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혹은 거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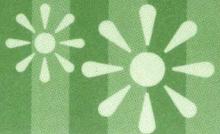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값싼 고시원이나 하숙집을 얻어 아르바이트로 전전긍긍하며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거나 그 와중에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파렴치한들의 집요한 유혹과 협박으로 성매매에 희생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이 어릴 적 혹은 성매매로 유입되기 직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림터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일시보호시설의 한계와 장기보호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열림터는 최장 6개월을 머물 수 있는 단기보호 쉼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성년이 대부분인 그곳 어린 학생들은 불안정한 기간의 보호만을 받고 그 다음은 궁여지책으로 입퇴소를 반복하는 등 안정되지 못한 보호를 받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성인이 되면 입퇴소를 반복하여 머물 수 있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준비도 되지 않은 생존자들을 사회에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지지집단이 없는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뻔한 상황에서 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던 상담소는 그저 그 무력함에 가슴앓이만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장기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3월 16일 '하담'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담이란?

하늘에 집을 지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담을 우리만의 집이기에 그 장소는 하늘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가기를 희망하는 어떤 곳의 상징입니다. '하담'은 그런 '하늘을 닮다', '하늘을 담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들의 공동체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즉, 하담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 쉼터) 공동체로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공간, 여성들간의 연대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 하담의 해, 달, 별의 노래

하담에는 해, 달, 별이 있습니다. 하담의 해는 하담에서 생활하게 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말하며, 달은 월마다 하담 운영에 도움이 되는 후원회원, 별은 수시로 하담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을 일컫습니다.

### 하담의 해

하담의 해, 즉 하담에 사는 하담인은 18세 이상의 성폭력피해 생존자로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 독립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하담인은 최대 2년의 기간을 하담에서 생활하면서 독립 자금을 저축해갈 것입니다.

하담은 자체적으로 생활규칙도 마련하고 생활관리도 책임지며,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는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하담지기가 있어 하담인과 함께 하지만 하담지기는 그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외부 지원을 연계해주는 일에 주력 할 생각입니다. 욕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할 예정이구요.

### 하담의 달과 별

하담은 앞으로 운영자립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독립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담인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담에는 달과 별, 즉 하담과 뜻을 함께하는 후원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담의 달은 고정적으로 월 일정액을 후원하는 사람들로서 하담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어줄 지지자들입니다. 이 사회의 가부장성으로 고통을 겪은 생존자들이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당찬 여행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뜻을 함께 해주실 달님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관련 문의 T. 338-3563 하담지기 원사)

하담의 비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모진 바람에 아파도 할 것이며, 때로는 태풍도 만나 산산히 부서지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불어 지내며 여성들간의 연대의 힘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비행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보태진다면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담비행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 나눔터 기획 I

# 성폭력특별법 10년,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정유석(본 상담소 성과인권팀)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개정과정을 간단히 짚어보고,  
지난 10년을 어땠는지, 또 이후의 10년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 - 법은... 여전히 멀다.

93년 제48차 UN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된 이후, 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성을 고려하지 않는 법 또는 사법적 시행상의 관습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5차에 이르는 CEDAW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여성 폭력에 대해 국내에 이행된 사법적 대응장치 마련과 여성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 제정 등의 성과를 보고한 바 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과 각 법안의 개정작업, 법안에 따른 각급 단위의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성폭력, 성희롱 관련 법제화를 두고, 정부보고서에서는 여성폭력관련정책의 뚜렷한 성과라 기술하고 있는 반면,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문제제기의 어려움과 문제제기시의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여성폭력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체를 말하기 어려우며, 피해를 말했을 때 ‘피해’라고 인정받기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한 문제제기이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관행의 문제, 피해자를 둘러싼 피해자 비난론과 여성비하적 발언을 통한 피해자의 인격권침해 문제 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은 외양상 인권선진국이다. 상대적으로 조약의 가입과 비준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매우 중요한 조항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UN의 권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은 회의가 열릴때만 열심히 하는 나라처럼 보인다. “(2004.3 월간‘인권’) – 한국에 대한 제네바 UN인권기구 실무자의 이러한 평가는 명문화된 여성폭력관련 법제화와 별개로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는 미흡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현상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우리사회의 이중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않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현 제도에서 그 원인을 짚어볼 수 있다. 차별적 권력관계와 여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입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범죄의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법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간 성폭력관련 법안 제·개정의 쟁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과제들을 짚어본다.

## 나눔터 기획 I

### - 성폭력관련 법안 10년

피해사실을 꺼내어 얘기한 몇몇 피해자들의 용기와 여성단체들의 법제정 촉구를 위한 노력은 90년대 초반, 기존 형사법체계의 '정조에 관한 죄' 규정만으로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이끌어내었고, 94년 특별 법 제정을 추동해 내었다. 제정된 법안은 이후 몇 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확보의 외양들을 갖추어왔는데, 제·개정의 내용과 관련법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 1. 〈성폭력특별법 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폭력의 규제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 수사·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

-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한 피해,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를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비친고죄로 함.
- 전화·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버스·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조항.
- 성폭력범죄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대상범죄로 보도록 함.
-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비밀누설 금지
- 피해자의 신청시 심리 비공개

**1997. 8. 〈성폭력특별법 개정〉** 근친간, 미성년자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

- 특수강도 등의 가중처벌 대상에 아간주거침입절도등의 미수범에 의한 범죄 추가하는 한편, 최고형에서 사형 삭제.
-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등에서 친족의 개념을 '4촌이내의 혈족'에서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범위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처벌에 있어 피해대상을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상 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함.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 제도
-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학생의 피해 사실(비친고죄에 해당하는)을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무화.
-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있어 민간진료시설 포함

**1998. 12. 〈성폭력특별법 개정〉** 카메라, 비디오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1999. 2.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성차별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구제 등의 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

- 고용·교육·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 분야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성희롱을 차별로 간주.

1999.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근로자를 보호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 등을 골자로 개정.

2000. 2.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취지로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성매수자 신상공개를 골자로 제정.

- 위계/위력으로 혹은 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2001. 5.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

2003. 5. 〈남녀차별금지법 개정〉 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적 차별 이외에 결과적인 간접차별 개념 도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 남녀차별개선위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003. 12. 〈성폭력특별법 개정〉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현행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취지로 개정.

- 특히 취약한 계층인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 관련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로 촬영, 보존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는 것,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증거보전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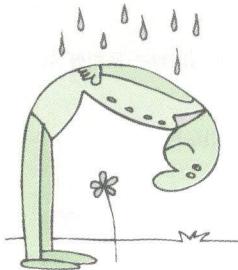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사법체계에서 보다 성폭력의 규제범위를 넓히고 사법절차상의 피해자의 권리를 특례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성희롱 관련 법안은 형사법적 규제에서 나아가 직장내에서의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적 권리가 성희롱의 형태로 나타남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그간의 동향에서 보듯, 90년대 이후의 성폭력피해자의 피해호소와 권리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은 범죄행위의 처벌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권리확보와 인권침해 방지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이 형벌권 뿐 아니라 피해로부터의 진정한 극복을 위한 기능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사법개념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CEDAW 이행 보고서의 기술과 같이 어느정도 외양을 갖춘 부분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충실하다면, 상담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전반적인 법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충,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법적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나눔터 기획 I

### – 이후 10년의 기대

성폭력 특별법과 성폭력관련법의 일정정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법적현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크게 집행상의 한계와 명  
문화된 법의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집행상의 한계로 주되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수사·공판 담당자  
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 관계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문제  
등으로, 이는 법적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2차적 인  
권침해일 뿐 아니라 나아가 판결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례로 강간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의 결혼을 합의 조건  
으로 제시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한 사례는 가해자가 책임지겠다고

만 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판시를 통해 피해자의 결  
정권을 다시 한번 침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일반의 실정', '경험칙'에 근거  
한 판단이라고 판시되고 있는 판례들이 주되게 비판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판시된  
경험의 주체가 기실 여성인권에 불감한 남성중심적 경험을 근거로 하는 데에 있다.

명문화된 법적 한계는 앞으로 개정과정을 통해 수정되고 확보되어야 할 부분으  
로 성폭력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한 부분, 친고죄 규정의 문제, 성폭력 개념이 불명  
확한 부분, 피해자의 권리확보가 미흡한 부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일례로 이 중 권리확보  
부분을 살펴보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8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인  
지한 피해사실 신고 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누설금지 등은 피해자에 대한  
특례로 제정되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권리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2003년에 신설된 영상물 촬영·보존 조항 등은 수사·재판과  
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아예 개정 취지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신뢰관  
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 등은 취지의 긍정성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별다르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권리침해시 구제수단이  
없어 명분에만 그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영상물 촬영 조항에 따라 피  
해 어린이의 진술을 녹화하여 반복진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특별법의 권리차원으로 인식되는 조항의 대부분은 선언에 그칠 수 있는 반쪽자리 조항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명문화된 법의 한계는 법 집행상의 한계와 더불어 이후 개정작업을 통해 주되게 수정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10년이 성폭력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사소롭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온 사회의 인식과 싸우면서, ‘성폭력은 범죄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법제화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존중받아야 함과 더불어,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권리가 있는 주체임이 법제화되는 시간이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특별법 10주년, 변한 것은?

#### 제정전

#### 제정 및 개정 후 변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정조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만 인식되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여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판례상 등장하게 되었다.
피해가 발생한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으로 연장되어, 증거를 확보하거나 고소여부를 결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착수, 처벌가능	어린이, 장애인 피해자와 근친에 의한 피해 등의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비친고죄로 엄벌에 처해진다.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을 고소불가	성폭력 피해일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도 제 3자 개입불가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 관련된 사람은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모욕감을 입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력이 미약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처벌조항들이 만들어졌다.
고소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진술내용을 영상물로 녹화하여 보존할 수 있다. 2003.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었는데, 친족의 범위가 4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어있었다.	98년 이후 친족의 범위가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으로 다소 확장되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기증처벌하도록 되었는데, 장애인의 범주에 신체장애인만 해당되었다.	98년 이후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기증처벌하게 되었다.
국민에게 재판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공개주의 이념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공개재판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가해자측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경우 등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어린이의 경우 특히 실제적이고 평등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13세미만의 피해자의 경우 외형상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성폭력적인 특성을 인정,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었다. 전국에 한, 두 곳의 성폭력상담소	전국 117개 상담소, 15곳의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통합적 지원. 또한 전국 대학에도 관련 학회 제정
직장내 성희롱을 직장생활의 활력소로 인식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 직장내 성희롱 개념
용기를 내어 고소하더라도 수사, 공판과정에서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2차피해 심각	경찰, 검찰의 성폭력 전담제 실시, 전담판사제 시행예정

## 성폭력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마치고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기획단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퍼뜩바뀔 것이다.  
– 무리에 주제이자



“질간년 독한년 그래 우리 살아있다.” 말하기 참여자 사진 워크샵 때  
생존자들이 같이 한 공동작업

본 상담소는 지난 13년 간 반성폭력운동을 통해, 45,000여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처음에는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게 말문을 열지만, 이후 누구보다 강한 치유에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지난 13년 동안 본 상담소의 반성폭력 운동과 생존자들과의 만남은, 생존자의 ‘말하기’가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있고 힘있는 그리고 변화하는 생존자로서 세상을 향해 이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소극장 ‘페아뜨르 추’에서 제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생존자임을 확인하고 성폭력 사실로 인해 자신들이 겪은 경험과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 100여명의 듣기 참여자와 14명의 말하기 참여자들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치유에의 힘과 용기를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 전시장 스케치

본행사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생각과 감정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가 행사장 1, 2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곳에는 행사 참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전시 작품, 그리고 참여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행사장은 구석구석 다양한 전시물들로 꾸며졌습니다.

**‘시름을 터는 발판’** – 골목길 건물 뒤로 숨은 옥외입구를 찾아내면 따뜻한 질감의 두툼하고 푹신한 느낌의 발판이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시름을 이 발판에 모두 털어 버리고 행사장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행사 기획단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0을 헤아리는 치유의 씨앗’** – 호두만한 석고 씨앗을 깨면 그 안에서 참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덕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참 반짝입니다. 당신이 있어 이 공간이 조금 더 밝고 따스해지네요.”

“오늘의 기억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 한구석에 빛날 수 있길 기원할게요!”

“당신은 이곳에서 크게 환영받는 존재랍니다.”

**‘막말하기’** – 막말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말하는 곳’ 이기도 하며 ‘막(幕) 뒤에서 말하는 곳’ 이기도 하며 ‘막 처음으로 말하는 곳’ 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종이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미 쓰여진 말은 천장으로부터 늘어뜨려져 있기도 하고, 벽에 붙어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쓴 글을 다른 글들처럼 그곳 벽에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 나눔 터 기획 Ⅱ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지금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 걸어가세요”

“미친개들에게 물린 미친 여자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미친개를 잡아라”

**‘정보전시코너’** –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의료지침서, 법률지침서 등 꼭 필요한 정보들과 외국의 생존자들이 쓴 책들을 소개하는 정보전시 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1:1 상담방’** –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온 사람들 중 누구라도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1:1 상담방과 편하게 쉴 수 있는 차가 있는 휴게실도 운영하였습니다.

### 생존자들의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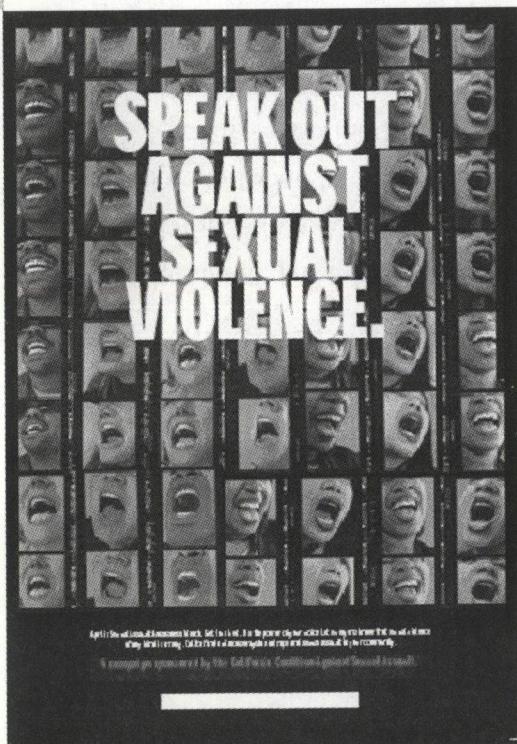
**작품 1 ‘성폭력 피해 생존자 보호시설 열림터 공동작업’** – 1층과 2층을 올라오는 계단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생존자들의 공동작품 종이접기가 전시되었습니다.

**작품 2 ‘接과 날’** – 계단을 다 오르면 바로 눈 앞에 “接과 날”이라는 제목의 수많은 입과 귀의 사진들로 구성된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취지인 말하기와 듣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다양한 입과 귀의 사진은 사람들의 말하고 싶은 이야기와 욕구가 얼마나 다양 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작품 3 ‘보듬기’** – 계단을 다 오르면 유리 기둥 안에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형겼 인형이 전시되었는데, 색색의 형겼으로 제작된 작품은 서로 입맞춤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의 아픔에 대해 가슴을 열고 따뜻하게 서로를 보듬어 안는 생존자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작품 4 ‘소원탑’** – 연보라색의 소원탑에는 참여자들이 두꺼운 한지에 소원을 적어 달 수 있도록 되어있어, 생존자로서의 희망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에 관한 소망, 그리고 개인의 일상에 대한 다양한 소원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 5 ‘질긴 년 독한 년 그래 우리 살아있다’** –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생존자들과 기획단이 워크샵에서 공동으로 작업한 걸개 ‘질긴 년 독한 년 그래 우리 살아있다.’라는 어구의 걸개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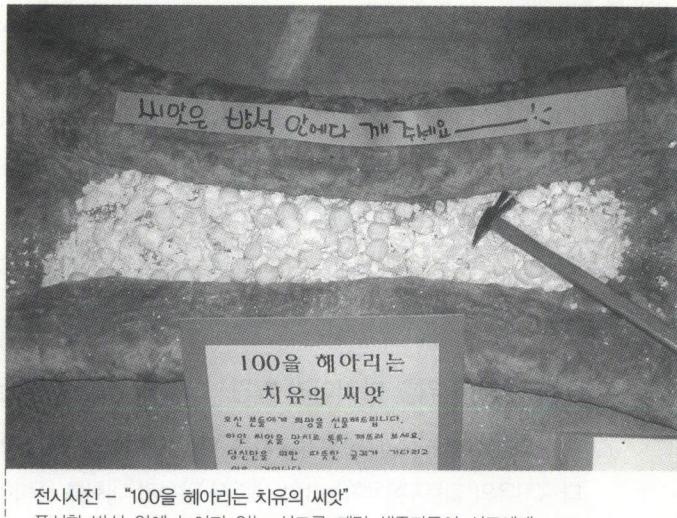


미국의 스피크 아웃  
포스터

사회에서 여성으로, 성폭력 생존자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표현해주었습니다.

**복수의 방** – 2층 행사장 중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것은 부두 인형으로 가해자를 모의 처단할 수 있도록 한 복수의 방입니다. 보라색 헝겊으로 둘러놓은 방에서, 참여자들은 그동안 두려움 혹은 사회적 강박 등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하고 싶은 말 등을 인형을 통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시물은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닌 생존자들에 의해 제작·전시되었고 행사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많았다는 것에서, 이 행사의 취지가 생존자 스스로 자신의 힘과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사진 – “100을 해아리는 치유의 씨앗”  
푹신한 방석 안에 놓여져 있는 석고를 깨면 생존자들이 서로에게  
해주는 덕담이 담겨있다.

## 본 행사의 진행

행사 오프닝은 기획단들이 이번 행사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에 대한 동영상이 상영되었는데, 과연 성폭력에 대해 여성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하기라는 것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후 이 행사에서 듣기 참여자들이 지켜주어야 할 규칙들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동영상이 마무리되고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들로 자칫 마음이 무거워지고 긴장되어 굳어질 수 있는 참여자들의 마음을 편안히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생존자들의 말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십여 명의 말하기 참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당시의 감정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생존자로서의 다짐 등을 표현했는데, 말하기 방식 뿐만 아니라 시를 낭독하기도 했고, 퍼포먼스와 미술 작품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내용 역시 친족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한 경험이 쏟아내졌습니다.

1시간 반정도 진행 후 10분간의 휴식 시간에 즉석에서 말하기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미처 준비되지 않은 신청자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당당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듣기 참여자들은 모두 약 4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행사 내내 자리를 비우지 않고 말하기 참여자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고, 서로 같이 가슴 아파하며 공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기가 끝난 후 진행된 이자람씨의 공연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노래가 되었는데, 이번 행사를 위해 만든 'Speak Out' 을 비롯하여 'No woman No cry' 등의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말하기 대회 듣기 참여자 중 한 분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성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의 무책임함을 개탄하기도 했으며, 가해자들의 의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뻔뻔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행사가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행사가 될 것과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합니다.

### [생존자를 위한 다이어리 발간! : A Song of healing-치유의 길동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생존자를 위한 다이어리 및 소책자 〈치유의 길동무〉를 발간하였습니다. 〈치유의 길동무〉 책자는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생존자들이 치유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말과 글들을 모아 일상에서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친구같은 수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생존자권리헌장, 생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소책자입니다. 이 책에는 또한, 생존자들이 서로 공감하는 어떤 순간들과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었던 명언과, 덕담, 삿귀들이 수록되어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말하고 난 후 후회가 될 때,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오늘 하루 한 말들을 곱씹으며 후회할 때, 다른 생존자의 말에 공감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장하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내용 및 구성

1. 2004년, 2005년 캘린더
2. 삽화가 들어간 예쁜 다이어리 속지
3. 치유에 도움이 되는 생존자의 편지, 글, 대담
4. 일상에서 힘을 주는 명언과 시들
5. 공감하는 어떤 순간, 지지와 격려의 말들
6. 생존자 말하기 대회 전시작품사진 및 외국 스피크 이웃 포스터 등
7.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생존자 지원체계

# 나눔터 학술 I



## “너는 강간당하지 않았어”

### 강간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남성중심적 사고

신윤진 (본 상담소 법정지원팀)

#### 1. 강간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서도 일정한 유형의 강간죄의 형량을 가중하고 있다.

강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강제적 몰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6)</sup> 그리고 이러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치하는 견해이다. 여기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인격적 주체로서의 개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과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 또는 여성의 출산능력에 대한 남성의 지배권으로 보아 ‘보호할 가치 있는 정조’를 가진 여성을 강

6) 이에 대하여, 질 삽입이 아닌 구강, 항문 삽입의 경우 및 남성 성기와 물건의 삽입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하며, 기존의 통설이 ‘아내를 제외한 여성’으로 강간죄의 객체를 한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견해가 최근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국, 「형사법의 성평등」, 박영사, 2004, pp.16-32, p.51 참고.

간한 자만을 처벌해왔던 태도와는 분명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강간죄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를 살펴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만 되어 있어 무엇이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 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강간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태도에 깔려있는 남성중심적 사고와 피해여성에 대한 몫이해를 지적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2. 판례가 생각하는 강간의 모습

### (1)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간죄는 본질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강간죄 규정하는 형법에서는 이러한 ‘부동의’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른바 최협의 폭행·협박론)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sup>7)</sup>

### (2) 판단 기준

가해자가 강간 당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들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강간죄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주된 증거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적용되고 있

7)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는 것들이다.<sup>8)</sup>

- 1) 강간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2)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초 접촉 상황
- 3) 강간 후 피해자의 태도
- 4) 강간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구조요청 여부
- 5) 강간 직후 신속한 고소 여부
- 6) 피해자의 과거 품행, 성력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건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하게 되면, 1)강간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였던 경우, 2)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 당시 처음 만났던 장소에 자발적으로 또는 큰 저항 없이 간 경우, 3)강간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만난 일이 있는 경우, 4)강간을 당하고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5)판례의 기준에서 신속하게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피해자가 과거 피고인 또는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술집이나 다방 종업원이거나 성매매의 경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간죄를 부정한 판결이 적지 않다.<sup>9)</sup>

### 3. 판례 다시보기

#### (I) 최협의 폭행·협박론의 문제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례와 학계의 통설적 견해인 최협의 폭행·협박론을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게 된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에 불과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sup>10)</sup>

이와 같은 이유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 즉,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

8) 장다혜, “단순강간의 형사법상 판단기준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pp.39-47 참고.

9) 대법원 91도546, 99도2608, 92도259, 90도1562, 서울고법 81노1370 등.

1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등.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강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으로 간음하였으나 그 정도가 판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논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누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성기를 삽입하였거나 삽입하려 하였는데 법원이 볼 때, 가해자가 더 난폭하게 간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자신은 강간 피해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판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강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강간죄의 형량이 과연 높은 것인지를 두고서라도, 형량이 높다고 해서 강간인 것이 강간이 아닌 것으로 정의되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일반적으로 강간행위라고 인식되는 행위도 최협의 폭행·협박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의사는 결국 무시되어거나 반대로 해석되어 버린다. 이는 판례가 강간죄의 보호 법익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sup>11)</sup>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그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한 행위를 강간이 아닌 '다소 난폭한 성관계'로 바라보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되므로 판례가 남성중심적 시각을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협의 폭행·협박론을 취하는 판례에 따를 경우,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하여야 한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판례상 '유형력의 행사'라고도 표현되기도 함)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는 1)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거나 2)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이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앞서 본 여섯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협의 폭행·협박론은 이러한 법원의 남성중심적 시각이 더욱 '효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피해자다움'의 허구성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법상 요구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의 들지 않는 정도(beyond

11) 박상기, "강간죄와 폭행·협박의 정도", 판례월보 제305호, p. 57.

reasonable doubt)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강간피해자답게' 행동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험이 배제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피해자다움'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강간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결국 강간죄를 부정한 판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 ① 피고인과는 이 사건이 있긴 한 달 전인 8. 초순경 피해자의 남동생을 위 목공소에 취직시켜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바도 있고 밤늦게 생맥주집에 함께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또한 위 목공소에 내려와 종업원들과 화투놀이까지 한 일이 있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서울지법 남부지원 85고합907)
- ② 채팅에서 만난 모르는 남자를 영어회화를 배울 욕심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만났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서 짐과 책 등을 가지러 숙소에 들어갔다 오자는 피고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대법원 2001도4462)
- ③ 피해자가 여관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 (대법원 2000도5395)
- ④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를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간 범인이라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설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평소에 절친한 친구이고 성격도 암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납득할 수 없어서 번민한 끝에 피고인을 조용히 만나 강간을 한 이유를 따져보기로 작정한 끝에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좀처럼 취하기 어려운 거동임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 (대법원 92도1405 판결)
-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리는 것이 두려워 여관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야간에 주점을 경영하는 34세의 성인 여자인 피해자가 아침 9시에 갑자기 강간을 당할 위기에 빠져 대로로 끌려가면서도 타인에게 전혀 구조요청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남부 96고합448 판결)
- ⑥ 강간도중 시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대법원 91도546 판결)
- ⑦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 이후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4일이나 지나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수원지법 성남지원 95고합122 판결)
- ⑧ 피해자가 술집점대부이고 피고인과 1회 성교가 끝난 뒤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었다는 것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걸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 (부산지법 91고합291판결)



이와 같은 사실들은 실제 판례에서 강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거나,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판례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우리의 경험칙’ 상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

- ①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친숙하게 지냈다는 것이 사건 당시 성관계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 ②의 경우 피해자가 봄늦게 모르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의 경우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두려움에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법원이 생각하는 ‘피해자다움’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강간시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판례가 강간 전후의 ‘피해자다움’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 ④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이틀 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다는 것이 이틀 전 사건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강간당한 피해자라면 소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역시 상반되는 잣대를 확인 할 수 있다.
- ⑤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사후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 ⑥의 경우 피해자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한 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와 강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판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⑦의 경우 4일 만에 고소를 한 피해자를 ‘4일이나 지나서야’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강간주장을 믿기 어려운 근거로 삼고 있다. 형법상 고소기간은 6개월이고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는 강간 피해자가 실제로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몫이해를 바탕으로 한 ‘피해자다움’의 규정이라고

12) 장다혜, 앞의 책 p. 52.

볼 것이다. ⑧의 경우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두 손을 비닐 테이프로 묶으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나간 경우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이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판례는 가해자의 행위를 단지 음란비디오에서 본대로 성관계를 해보려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강간을 '다소 난폭한 성관계' 정도로 파악하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4. 강간죄 새로 쓰기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남성의 시각과 경험으로 구성된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할 때 판례가 들고 있는 '우리의 경험칙'이라는 것도 사실 '강간당하지 않은 남자'의 경험칙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고 또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시각에서 피해자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로 강간이 아닌 것이 된다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공허한 권리일 뿐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진실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면, 강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역시 남성적 시각으로 구성된 '피해자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경험을 기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1991년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은 '성교 도중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성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강간이다'라고 판시하였고, 2003년 7월 일리노이주는 형법 개정을 통해 '처음에 성교 혹은 성적 접촉에 동의한 사람이 성교 혹은 성적 접촉 도중 동의를 철회하면 어떠한 성교나 성행위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부동의가 강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법현실화한 모습이다.

법학자와 법원도 스스로 말하는 '꽃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형사법의 기본이념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나눔터 학술 II



## 치통과 성폭력 고통 '성폭력의 기준'에 대한 단상

변혜정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

### 요즘

나는 치통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가 아파 치과에 갔더니, x-ray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환자)의 상황으로 그것이 나(환자)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은 인정한다. 문진으로 나의 고통을 인정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인정한 것은 그 환자가 거짓으로 고통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자에 대한 믿음과 의사의 '경험적 상' 문진으로도 환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환자의 고통 호소에 따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임상학적으로 100%의 모든 환자가 고통을 느낀다고 간주되는 절대적인 수준(고통의 역치 thres hole)이 되기 전에도 환자의 조건에 따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생물학적 고통을 하소연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껴 그것을 호소해도 어떤 누구도 그 고통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즉 자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치통과 같은 고통에 대해서는 의심받지 않는데 비해, 여성/피해자의 성폭력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받는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믿지 않는가? 의학적 고통이 아니라서? 의학적 고통이 아닌 자식 잃은 어미의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공감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의학적 고통 여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여성/피해자들의 그 고통을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의 관념 때문이다. 즉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작극이라는 전제에서부터 그 고통을 사소화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의 고통의 정도는 같지는 않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나 피곤이 심해지면서 치통이 다시 나타나듯이 그러나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듯이, 성폭력 고통도 그 여성의 어떤 여성이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난 나의 이야기와 나의 친구의 이야기를 써야겠다.

난 초등학교 다닐 적에 나의 의사에 반한 ‘성적’ 경험을 했다. 나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현재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추행 경험이다. 좀 자세히 풀어보면, 난 교통사고-다리 수술 이후의 후유증으로 12세 때에 허벅다리의 근육 긴장의 고통에 시달렸다. 이러한 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추천된 곳이 무교동의 스포츠 마사지실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곳은 30년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던, 소위 국가선수들이 다녔던 곳으로 공신력이 있는 곳이다.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다녔지만 나중에는 혼자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허벅다리를 주무르던 그 치료사는 분명히 나의 질(성기)을 주물렀다.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안난다. 어린 마음에 ‘아픈 곳은 허벅다리인데 왜 그곳을 주무를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그 치료사는 ‘치료의 일환으로....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항상 주물렸으며(만졌으며) 그 행위는 마지막 치료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당시 6학년이었던 나는 참 이상한 ‘치료 않았다.

그러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이라는 성폭력의 개념으로, 나는 성추행을 당한 것이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 아니면 어린이 성폭력을 많이 다른다는 소아 정신과 전문가의 말처럼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주 적은 숫자만이(10%도 되지 않는 사람)만이 정상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상한 통계대로, 나는 10%도 안되는 집단 안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난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인가? 혹시 꿈이 아닌가? 그러나 그 경험은 분명 꿈이 아니다. 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너무도 많은 여성들이 나와 같은 이야기





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개념, 기준 자체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해야 한다. 성폭력의 개념이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의사에 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난 강하게 주장한다. 그 당시의 (기해 남성)행위나 여성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여성의 고통’을 중심으로 성폭력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의사에 반한’이라는 동의와 거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그 근거도 구성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의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피해자(victim)도 아니다. 동시에 생존자(survivor)도 아니다. 그것을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여러가지 이유에서)극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생존자도 부르는 것도 반대한다. 나는 나의 경험에 어떠한 의미도 두고 싶지 않는 것이다. 나의 맥락에서 그것은 ‘고통’으로 이야기될 수 없으며 또 이것은 나의 허위의식도 아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추행이라는 언어가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성추행으로 해석하고 고통으로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이라는 명명이 있으니 이제와서 그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폭력 명명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물론 나의 친구는 나와 유사한 행위를 경험했으며 나와 달리 그것을 성추행/폭력으로 이름붙인 적이 있다. 현재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 이름 붙였지만 그녀 역시 여성주의 공부를 하면서 그 이름을 버렸다. 그 당시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 명명한 이유는 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해줄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약화시키기 위한 자기만의 치유라고 이야기한다. 나와 달리 그 친구는 다리 치료가 아니라 아저씨의 방문 침입의 경험을 했다는 것, 더욱 중요한 차이는 나와 달리 그 친구가 무척 조숙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그 친구 엄마는 ‘여자가....’를 달고 다니셨단다. 여성 성기의 중요성을 아주 어릴 적부터 들은 그 친구는 목숨보다 중요한 여성성기 소위 말하는 ‘순결 교육’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녀에게 소중한 성기를 결혼할 사람이 아닌 아저씨가 함부로 했다는 것은 그녀의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이 결혼할 수 없음에 대해 아주 많이 비관했다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자신의 성



적 자존감 침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결혼을 망칠 것 같은 그 아저씨를 저주하느라 사춘기 시절이 아주 망가졌다”는 것이다. 이후 성폭력이라고 자신의 경험에 이름 붙였지만 자신의 성적 자존감의 침해와 그것의 관련성이 없음을 발견하자 가차없이 성폭력의 이름을 걷어냈다. 그 당시의 고통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그녀와 나의 맥락의 차이로 인해 ‘의사에 반한 행위’의 의미는 전혀 다른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날 발견했다.

계속적으로 성폭력을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의 차이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고통의 맥락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으로 왜 성폭력이 문제인지를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가 드러날 때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이라는 행위중심의 성폭력의 기준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의 행위–저항이라는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을 판단하는 경험칙도 그 범위 내에서 모여질 것이다. 그럼에도 아이러니는 우리가 ‘피해자의 관점’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이라는 성폭력의 개념/기준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관점이란 말 그대로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언어이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말해도 나의 치통처럼 잘 믿어주지 않는다. 피가 나거나 고름이 없는 치통의 경우에 (그것을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꾀병’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듯이, 타인의 고통을 믿고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피해자가 특별히 예민하거나 개인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던지 아니면 ‘꽃뱀’으로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도둑맞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물론 ‘아주 가난한 사람’이 ‘국보급 고려청자’를 분실했다고 하면 그때서야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데, 여성의 성폭력 사건은 무조건 처음부터 의심받는다.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국보급 고려청자를 가질 수 없다는 논리처럼 그 여성/피해자가 절대로 성폭력을 당했을 리 없다는 **여성/피해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의심이 결국 그 여성의 성폭력 고통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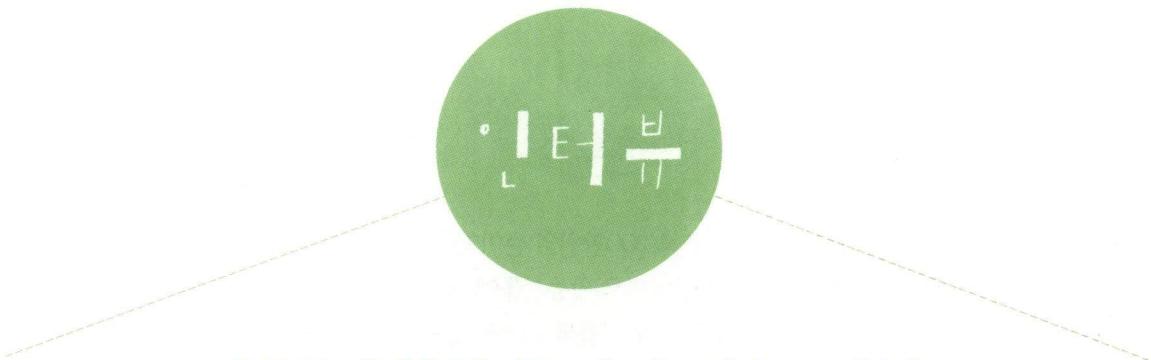
그러나 의심받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절도죄를 신고하는 것처럼, 그 여성/피해자도 이미 의심받을 줄 알면서 신고/언어화할 때는 그 만큼 그것이 고통스럽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이 고려청자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피해자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는 데 있다. 소유한 그 무엇을 남성/가해자가 강탈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여성/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sexual integrity)을 침해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큰 것이다. 그러나 여성/피해자들은 ‘남성/가해자들이 보기에 는’ 여전히 성폭력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오히려 전술한 나의 경우-피해의 고통이 다 같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남성/가해자들이 갖는 이러한 의심(네가 특별히 예민한 것이 아니냐? 고로 고통은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다)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고통이 다 같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 고통이 절대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여성들의 차이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그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를 드러내 고통의 실체를 연구하는 것은 남성들이 의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남성들의 의심이 무서워서 고통이 다 같고 엄청나게 크다고 진술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다른 효과를 자아내 모든 여성들을 피해자화하기 때문이다.

나는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하며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 그 고통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역사-여성들의 섹슈얼리티 즉 여성의 관계맺는 방식, 욕망, 친밀성에 대한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들이 먼저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고름이나 피(가시적인 증거)가 없어도 환자들의 고통이 이해되기 위해서 다양한 환자들의 고통 경험에 대한 이해와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려는 태도가 필요조건이듯이, 다양한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피해자의 고통의 역사를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것이 그 시작이다. 언제, 어떻게 고통이 시작되었으며, 그 고통의 실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여성들은 왜 그것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지에 대한 여성들의 차이에 대한 이해, 특히 그 여성 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섹슈얼리티 경험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법, 제도, 남성/가해자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가해 행위에 대해 고통이 덜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 경험에 대한 비교를 통해 여성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덜하도록 무엇인가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야겠다.





## 200만원의 끝나지 않는 여행

### - KBS노조간부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시타 (KBS노조간부 성폭력사건을 지원했던 활동가)

애초에 이 글에 대한 청탁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 속에 어떤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비록 피해자들은 생색내는 것이 싫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주머니에서 피해자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역고소 공대위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활동가들에게로 건네진 이 200만원의 행로를 누구에게든 이야기하고 싶었다. 200만원의 기부금 — 사실 이 금액 자체만 보자면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세상과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액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연원한다. 이 돈이 애초에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행적을 거쳐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이하 <공대위>)에 기부되었는지 그 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바램'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의 이야기도.

지난 2000년도 말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싸움을 시작했다가 기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해, 꼬박 2년 반 동안 검찰로 법정으로 불려 다니며 힘겨운 싸움을 해냈던 KBS노조간부 성폭력사건 피해자들. 나는 2년 반의 싸움 동안 그녀들을 지원했던 활동가이자, 함께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얼마 전 피해자들이 <공대위>에 기부한 200만원이라는 돈은 이 긴 싸움의 도중에 만들어졌다. 기해자로부터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여성운동 모임 연대체인 관악여성모임연대 활동가들이 소리소문도 없이 2002년 6월 5일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일일 호프를 연 것이다. 당시 성폭력 기해자인 동국대 K교수가 여성 동료교수를 명예훼손 역고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역고소와 같은 적반하장의 행태와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욱하던 때였고,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많이 모였다. 그래도 그렇지, 이 크고 귀한 돈이 마련되다니!

# INTERVIEW

나는, 한 번의 일일호프로 200만원의 순이익을 남기기까지 보이

지 않는 곳에서 동분서주 움직였던 관악여모 활동가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연대감과 안

타까움과 분노와 슬픔을 안고 일일호프에 찾아와 이름도 기척도 없이 가난한 주머니를 털었을 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렇게 모아진 200만원 안에 묻어 있는 분노와 격려와 바램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러나 역고소 당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이 돈은, 가해자가 어이없이 고소 취하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짐처럼, 빚처럼, 혹은 약속처럼 남겨졌다. 결국 올해 초 두 분은 나에게 “이 돈을 어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면서 기부할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결국 피해자들을 2년 반 동안 괴롭혔던 명예훼손 역고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공대위>에 이 돈을 기부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이 글을 어떻게 끝맺으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200만원이 모아진 이야기도, 그 돈을 다시 다른 피해자/활동가들을 위해 기부하는 KBS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모두 의미있고 감동적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기록하고 전해야 한다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뭔가 두렵고 찜찜하고 망설여졌다. 긴 싸움을 하고도 사건이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200만원의 돈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 돈을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에 기부할 때 그것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

사실 이 돈을 기부할 때 피해자들의 감정이 그렇게 한 가지 종류의 분명하고 정리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이 사건은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으니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이미 끝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단순히 과거로 떠나보내는 것도, 계속 끌어안고 현재를 사는 것도, 버겁고 부분적이고 모순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너무 간단하게 마침표를 찍는 방식으로 이 글을 쓰게 될까봐 조금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다.

200만원을 기부하는 것 대해 최종적으로 의논할 때 그녀들의 표정이 어땠었는지 회상해 본다. (물론 이것은 나의 위치와 감정과 해석이 반영된 ‘나의’ 기억이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그 기나긴 싸움은 끝이 났으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는 후련한 표정인 것도 같았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 이긴 법정 싸움에서 결실을 보지도 못하고, 원래 내고 싶었던 사건 백서도 (역고소 위험으로 인해) 포기하고, 200만원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구나, 하는 착잡한 표정인 것도 같았다. 마치 몇 년 동안 어깨에 지고 다녔던 무거운 마지막 짐을, 그러나 풀어보지 못한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처럼 말이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만 한다는, 함께 생각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짐이고 빚이고 약속이고 바램인 돈 — 이 돈의 출처와 용도만이 아니라 이 돈을 기부한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때로는 모순적인, 그러나 분명 어떤 용기와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사유되고 다르게 상상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200만원의 기나긴 여행에 덧붙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다.



#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새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자립지지 공동체

철옹성 아지트이자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령 (새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자립지지공동체 실무자)

## 자립지지공동체는?

자립지지 공동체는 성매매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활동 단체입니다. 성매매 현장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새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생존자들의 자립을 지지하기 위하여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 공동체를 설립하였습니다.

## 자립지지공동체의 비전!!

자립지지공동체는 그 동안 긴급구조 사업 및 교육, 상담,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정서적인 치유와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법적, 의료적, 정신적 지원과 더불어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활동가 교육, 강연 등의 활동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여성부 지원사업,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쉼터 등 사업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와 현장 상담소가 마련됩니다. 생존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 비즈공예 전시 판매 등으로 자립 자활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립지지 공동체의 생존자들이 적극적인 회원활동을 통하여 사업기금을 마련하고, 자활 공동체인 비즈공예팀의 활동도 쉼

터 운영과 연결되어 생존자들의 자립지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공동체 스케치”

### - 청소년 그룹홈 -

아담한 3층 집 ... 봄이 되면 예쁜 정자와 잔디가 깔릴 동네가 다 내려다보이는 톡 트인 옥상을 가진... 그 집에 잘 웃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꽃님이(가명), 눈 빛이 쓸쓸하지만 재미있게 말을 잘 하는 나무, 연애소설을 좋아하는 새침떼기 달님이, 아빠 같은 푸근함과 엄마같은 터프함을 골고루 지닌 별이가 찍찍한 생존자 언니와 천사와 고집불통 기질을 부족함 없이 고루 갖춘 활동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 길음동 피난처 -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언니들이 모여 살아요.  
언니들의 눈처럼 빛나고 언니들의 꿈처럼 아름다운 구슬공예도 하고, 아는 만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만큼 함께하기 위해 현장활동가가 되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식솜씨 좋은 이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배추언니, 잠자는 쉼터공주 잠공주언니, 그리고 얼굴이 예쁜 예쁜이 언니, 언니들을 돋는 생존자 현장활동가인 장군이 언니, 새해라 잠시 집에 다니러 간 사랑이 언니, 가을이 언니, 달래언니, 민들레 언니... 많은 언니들이 새 삶을 다지고 있지요.

### -현장활동 상담소 -

2004년 1월에 새 단장하고 성북구에 상담소를 신고해요.  
길음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에 인접해 있고요.  
솜씨 좋고 재주 많은 길·김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어요.  
성매매 현장에 있는 언니들을 긴급구조하고 현장방문 상담을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언니들만의 철옹성 아지트가 될 것입니다.

### - 새 쉼터 -

2004년 1월 자립지지공동체 야심만만 프로젝트!!!  
언니들을 위한 아늑한 보금자리가 마련됩니다.  
창에 하늘이 보이고, 따뜻한 별이 드는 행복한 집을 물색 중에 있구요. 마당이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지요.



“반갑습니다.

열린 마음의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본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어린(김양영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상담소와 함께 하게 된 여성주의 상담팀 간사 어린(김양영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라는 저의 별명을 들으시고는 무슨 뜻이냐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린은 마음이 열린(open mind), 가능성의 열린(open opportunity)이라는 뜻으로 제가 중시하는 가치를 담아 지은 이름이랍니다. 여성주의자로서 정체화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써온 이름이라서 저에게는 본명보다도 친숙하고, 애착이 간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만나면 ‘어린’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세요.

우선 여성주의자로서 상담소의 반성폭력 운동에 함께 하게 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정말로 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도전으로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흐름 역시 많은 여성주의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주도 되어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최근 정부의 개입과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나 여성운동의 큰 흐름인 반성폭력 운동과 정책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간의 역사와 가치를 잊지 않고, 그 토대 위에 운동의 성과를 더 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가야 한다는 것인겠죠. 저 역시도 반성폭력 운동의 큰 흐름 속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 중심의, 여성주의적 가치 중심의 운동을 더해 가려 합니다.

상담소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작년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부터였습니다. 당시 행사 기획을 맡으면서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이 생존자들의 말하기장을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안전하게, 그리고 진심이 통하게 만드는 가는 참으로 큰 숙제였죠. 그렇지만, 상담소분들의 신념 가득한 모습은 생존자들과 이러한 말하기의 장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더욱 키워 주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며 가슴 아픈 현실에 울기도 했지만, 생존자에 대한 존중과 반드시 치유된다는 믿음, 그

리고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는 연대감 등의 반성폭력 운동 철학이 깊이 스며든 행사였죠. 그간 상담소를 찾은 생존자들 안에 있는 힘을 믿으며, 함께 변화해 가고자 열심히 활동해온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동이 저를 상담소로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여성들의 애정을 먹고 자라온 이 상담소를 더욱 정감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자들과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담소를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시는 한분 한분에게 정성과 관심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들고요. 더불어 여성 NGO단체로서의 강점인 동료가 힘이 되는 곳을 만들기 위해 동료를 보듬는 활동가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자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의 기대처럼 상담소에 다양한 시각과 여성주의적 고민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성주의적 과제와 운동성을 잊지 않도록 방향키를 잘 잡아야겠죠.

올해 저는 상담팀 간사로서 상담과 의료비지원, 통계를 담당하며, 작년에 이어 말하기 대회를 훌륭히 치러내려 합니다. 그 중 의료비 지원은 행정업무가 많긴 하지만, 공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생존자에게 필요한 의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보람 있는 업무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일 없이 많은 분들이 사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향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 참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올해부터는 1인당 300만원 까지 지원폭이 늘어나 그간 정부 등 의 미흡한 사회적 지원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활용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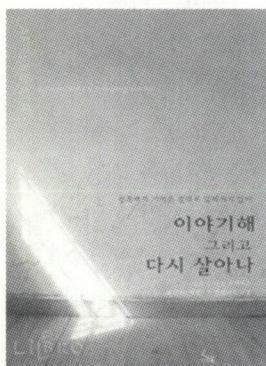


## 수잔 브라이슨,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원제 – Aftermath: Violence and the Remaking of a Self)

메이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기획단)

- aftermath*
- 끔찍하거나 불운한 사건으로부터 이어지거나 유래한 무엇
  - 목초밭의 풀베기 이후에 새롭게 자라는 풀의 성장



미국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수잔 브라이슨은 1990년, 그녀를 죽음 직전까지 데려가는 성폭력을 겪는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던 화창한 아침 맞닥뜨린 그 날의 폭력 이후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 Stress Disorder)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배우고 가르쳐왔던 철학이 폭력에 대해, 트라우마에 대해, 부서져 버린 자신 안의 무언가에 대해 설명해주지 못함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이 마주친 혼란과 역설, 무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탐구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이런 탐구는 계속 살아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 책은 한 철학 교수의 연구물이자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기가 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샬롯 멜보는 말한다.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브라이슨 역시 “나는 지난 여름 프랑스에서 살해당했어”라고 쓴다(p. 11).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이렇게 신체의 생명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자신은 죽었다고 느끼는 모순된 인식 속에 놓인다. 한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이 파괴하는 것은 세포나 장기들뿐만이 아니다. 폭력은 몸에 체화된 개인의 자아를 파괴한다. 성폭력의 행위에서 피해자가 받는 메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너는 이런 일을 당할 만 해. 나는 너를 혐오해. 너는 내 도구이며 대상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야.’ 타인에 의해 존재가 무화無化되는 경험을 겪은 피해자는 계속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 세상과 상호 작용해 온 역사 – 자아 – 를 살해당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그 사건’ 이전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은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게 된다. 또한, 트라우마가 가져오는 증상 중 하나인 플래시백flashback은 몸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사건 당시의 상황, 소리며 냄새, 촉감까지 생생히 재경험하는 것인데, 이는 기억이 떠오른다기 보다는 몸이 당시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다. 트라우마의 기억에서 몸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몸에 기억이 담겨있다기 보다는 몸이 기억을 따라다닌다. 이렇듯 트라우마의 경험은 일반적인 연속적 정체성의 모델, ‘흐

르는 시간'의 모델, 그리고 몸과 분리된 정신의 모델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 first-person narrative'를 선택한 브라이슨의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트라우마 생존자의 경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미덕을 갖는다.

왜곡되지 않고 몸에 각인되어 버리는 기억의 문제에 집중한 기존의 많은 트라우마 연구와는 달리, 브라이슨은 이제 파괴된 자아가 어떻게 재형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아마도 이 문제는 그녀 자신이 어떻게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목숨이 달린' 질문이었을 것이다). 트라우마의 경험 이 드러내는 것은 자아라는 것이 외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존재의 간주관성 intersubjectivity이다. 그리고 이 간주관성에 대한 통찰이 다시 말해주는 것은 상처의 회복 역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가 인용하는 나찌 홀로 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나듯 트라우마 말하기는 치유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오직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믿을 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발견하거나 또는 만드는 경우에만 생존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p. 12)." 트라우마 치유는 '언어적 성격'을 갖는다고 브라이슨은 강조한다. 말하기를 통해 생존자는 자신을 거듭 고통의 순간에 가져다놓는 '트라우마의 기억'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트라우마 이야기 속의 기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메시지를 일방적·폭력적으로 각인 받는 존재였던 피해자는 말하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존재,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존재, 의미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이 책을 읽으며 전달받게 되는 – 물론 아주 일부일 뿐이지만 – 그녀의 고통 때문에 나는 몇 번씩이나 눈물을 훔쳤고, 책을 덮고 심호흡을 했고, 때로는 이런 폭력이 존재한다는 걸 잊고 싶어 하게 될 정도로 괴로워지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공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윤리적 책무를 남긴다고 생각한다. "저항의 '아니오'"는 부정의 "아니오"가 아니다. 그것은 발생했던 일을 인정하고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거부하는 것으로의 "아니오"이다."(p. 136) 내게 이 말은 고통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브라이슨의 제언으로 읽힌다. 고통에 공명한다는 것은 "참 안됐군요(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 다행이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존자의 의지에도 공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뿐 아니라 용기도 전달해준다. 브라이슨은 "생존자가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취물이다"(p. 51)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그녀 내면의 힘에 대해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사족으로, 한국어판의 부제로 쓰인 '성폭력의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라는 문장은 브라이슨이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존자의 강함에 반발하며, 오히려 성폭력의 '끔찍함'을 환기하는 역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다.



# 〈여섯 개의 시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 - 사람의 존재(Being)와 행위(Doing)에 대하여 -

김미랑 (청소년인권보호센터소장)

### 영

화보는 것을 좋아하고 수다가 취미이자 특기이기는 하지만, 대중을 계도하겠다고 나선 영화를 보고 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여섯개의 시선〉 중 하나인 “그 남자의 事情”이란 영화는 이미 구설수에 올라있는 터에 영화평론에 문외한인 나는 더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나 어차피 나는 나의 시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어쭙잖게 잘난 척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영화를 좋아한다. 뭔가 가슴 뭉클하고 살아있음을 진하게 느끼게 하는 영화는 여운이 남아서 내 삶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그러니 인권 계몽 영화인 〈여섯 개의 시선〉을 보는 마음은 그리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이 아니다. 영화를 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은근히 강요될 때 감동은 저 멀리 사라져버린다. 때로는 감독의 지나친 주제의식 강조와 상징의 남발은 보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한다. 그래서인지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은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이다. 가슴 짹한 감동을 머금고 있는 동안,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람에 관한 문제, 특히 인권은 머리로 생각되고 이해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따듯한 애정으로 불지펴 올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사람에 관한 문제가 사람에 대한 따듯한 애정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인간에 대한 애정만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못내 아쉽다.

오죽하면 영화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차라리 다큐멘터리가 더 좋다. 느끼고 깨닫는 것은 철저하게 보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강요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이제는 ‘여섯 개의 시선’을 바라 본 인권을 얘기해야 할 것 같다. 각기 다양한 주제여서 자칫 혼란스러워질까봐, 여섯 개의 시선 중에서 내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두개의 시선을 골라 얘기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시선은 취업을 앞둔 실업계 여고생의 이야기 “그녀의 무게”이다. 내적인 것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사회에서 평범함과 소박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튀어야 하고 그래야만 존재의



여섯개의 시선 – 그녀의 무게  
임순례 감독(2003년)

## 성문화돌아보기

의미가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쌍꺼풀 수술을 해야하고 몸무게도 줄여야 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사회로 나가는 첫 관문에서 벌써 좌절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의 눈은 아주 쉽게 판정을 내린다.

“저 사람 감독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임순례 감독을 바라보는 일상적인 시선이 “그녀의 무게”를 한마디 말과 느낌으로 정리해준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고 역할도 한정지으려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떤가? 고백컨대 문득문득 내 안에 외양으로 사람값을 매기려는 못된 버릇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아무리 머리로는 사람값은 갤 수가 없고 누구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서도, 은연중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런 고약한 습성이 종종 나를 놀라게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보고 듣고 또 공부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시선은 “그 남자의 사정(事情)”이다. 그 남자는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이다. 그 남자가 사는 아파트 문제는 A자가 주홍글씨처럼 크게 써어져 있고, 아파트 벽에는 온통 큰 글씨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라, 모두 공개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는 등의 글이 써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경계의 대상이고 회피의 대상이다.

이 영화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성범죄자의 인권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상공개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이름과 시·군·구 정도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좀더 강화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영화는 성범죄자가 주위 사람들의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 아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남자가 성범죄자일지라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 때문에 구설수에 시달렸다.

그 남자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그런 사정(事情)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법행위 때문에 처벌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좀 더 엄정한 신상등록제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존재와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인권을 얘기하게 될 때, 자칫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인간 존재(Being)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행위(Doing)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은 존재(Being)의 문제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위(Doing)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근거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의 불문율이다. 인정해야 할 것은 사람의 존재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이며, 알아야 할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사람값을 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섯개의 시선 – 그 남자의 사정  
정재은 감독(2003년)



## 이끼없이 주는 나무

기부, 알고 보면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상담소 식구들은 요즘 봄 기운으로 산들산들합니다. 상담소를 나서는 길에는 조금 있으면 노란 개나리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춤거울에 빙긋 웃음도 나온답니다. 이제 제대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구요..

올해는 상담소가 조금 더 가까이 성폭력피해성존자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로 올해부터 성폭력피해성존자 자립공동체 '하담'을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하담'은 성폭력피해성존자의 장기 쉼터이자 자립공동체로서 생존자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성폭력은 사회적 문제이기에 성폭력피해성존자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겪어나가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 애쓰는 작업은 단지 여성단체 혹은 상담소 활동가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결국 우리 모두가 살맛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나눔이 있다면 양 성평등 사회의 길은 조금 더 빨라지리라 믿습니다.

성폭력피해성존자를 돋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상담소를 후원하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한 우리 스스로를 위한 투자입니다.



### 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나눔티〉를 보내드립니다.
- 상담소 발간 자료를 20% 할인해 드립니다.
- 상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좌, 교육신청시 수강료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 각종 상담소 행사에 초대됩니다.
- 회비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납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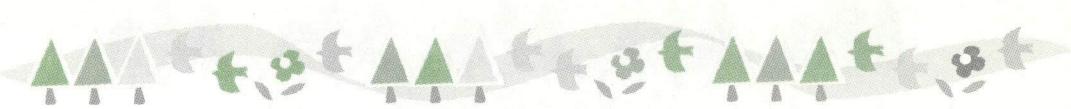
- cms 자동이체 – 금융결제원의 협조로 회원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회비가 상담소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담소에 알려주시면 매달 26일 약정하신 금액이 인출됩니다.
- 자동이체 –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상담소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

- |                          |                       |
|--------------------------|-----------------------|
| • 국민은행 009-01-1176-632   | • 외환은행 224-22-02532-8 |
| • 기업은행 216-013179-01-018 | • 조흥은행 308-01-133092  |
| • 농협 037-01-194301       | • 우리은행 441-04-107528  |

• 지로 납부 – 3개월에 한번씩 3개월 분의 지로가 연 4회 우편 발송됩니다.

위의 납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어 기획조직팀 김자선 간사(02-338-2890)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득록 김선미 김선애 김선주 김연준 김재욱 김혜경 김해정 박준규 방상희 양영희 원순경 윤영규 이경환 이수명 이연실 이은상 이자선 이해득 임정훈 장윤정 최성호 황지영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람 강경민 강남식 강득록 강수연 강연순 강인화 강현정 계경문 고계영 고구선 고금이 고영석 고정남 고진규 구나은 구민지 권경희 권김현영 권수현 권순남 권정현 권주희 권해수 권력간 금철영 길종성 김강자 김경선 김경옥 김경현 김경희 김광진 김금란 김덕현 김동령 김동희<sup>1</sup> 김동희<sup>2</sup> 김두나 김둘순 김미경<sup>1</sup> 김미경<sup>2</sup> 김미라 김미숙<sup>1</sup> 김미숙<sup>2</sup> 김미주 김민규 김민지 김병숙 김병희 김보연 김삼화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 김선주 김성득 김성신 김소명 김숙희 김순자 김언정 김엘림 김연기 김연준 김연희 김영서 김영애 김영정 김옥선 김용란 김용자 김원식 김원희 김윤경 김은미 김은정 김응진 김의창 김이윤상 김인숙 김일률 김재욱 김정미 김정신 김정이 김주희 김준호 김자선 김지연<sup>2</sup> 김자윤<sup>1</sup> 김지혜 김진만 김진희<sup>1</sup> 김진희<sup>2</sup> 김택진 김하연 김해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정 김형수 김혜경<sup>1</sup> 김혜경<sup>2</sup> 김혜련 김혜숙 김혜정<sup>1</sup> 김혜정<sup>2</sup> 김회영 김효선 김후자 김홍식 김희경 나길희 남기태 남우희 남정임 남정현 노미선 노미순 노주희 도순아 류수진 류인경 맹주현 문강진 문해란 문효진 민웅기 민현경 박경실 박경화 박내현 박미경 박미숙 박미향 박선희 박성근 박소연 박소영 박순복 반신욱 박신정 박은숙 박정옥 박정희 박종선 박준규 박지영 박지현 박진성 박진숙<sup>1</sup> 박진숙<sup>2</sup> 박찬운 박창은 박현주 박혜영 박혜진 방상희 배은경 배희진 백선희 상목스님 서명선 서미현 서민자 서백영희 서성준 서정표 설연자 성시녀 소영주 손경희<sup>1</sup> 손경희<sup>2</sup> 손명숙 손수경 손이전 손종성 송문숙 송수영 송영훈 송현숙 신동언 신동현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희 신숙희 신은주 신정혜 신희경 SUNS 30대 싱글모임 심수희(김인옥) 심혜련 안민 안재훈 안철민 안형윤 안홍례 양애경 양연주 양영희 양효준 엄경출 엄인숙 여여자 오숙희 오유지 오윤지 오윤지 오정은 오정현 오태형 오후선 오후옥 옥민영 우순영 우안녕 원순경 원형섭 유경숙 유성혜 유숙영 유은주 유인숙 유한광 윤명화 윤선화 윤숙경 윤애리 윤양현 윤영규 윤영미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윤형흔 이경로 이경미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규화 이근혜 이금형 이나미 이낙훈 이내화 이대영 이덕화 이명숙 이미경 이미정 이민영 이민희 이백수 이상근 이상미 이상미 이선숙 이성수 이수명 이수자 이순순 이애란 이어진 이연실 이영분 이영식 이영애 이영표 이유정 이윤선 이윤성 이은미 이은상 이은애 이은정 이재인 이정아 이종관 이종환 이자선 이찬두 이창윤 이철현 이춘미 이무른메 이해득 이현숙 이해경 이해숙 이호숙 이호진 이효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순영 임자영 임정훈 임종은 임주희 임홍섭 장순복 장윤경 장윤정 장철우 장필화 전민숙 전석호 전성혜 전연배 전유경 전홍석 전희진(김환수) 정경자 정교화 정금자 정남운 정대현 정문영 정신애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석 정유순 정은선 정은숙 정인희 정정희 정혜련 정호성 조경희 조민우 조소연 조순희 조영석 조은숙 조은희 조이수현 조인석 조인숙 조재학 조정숙 조종신 조천금 주명희 지인순 차성안 차정혜령 채우리 채지수 천정환 최경식 최금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현 최보원 최선규 최성호 최양렬 최영숙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윤수 최윤정 최은경 최은미 최은순 최정운 최지녀 하은주 하진옥 한기모 한보경 한재철 허나윤 하운주 하준복 홍보연 홍성복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황성기 황순경 황재호 황지영

상담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평생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n

강정자 강학중 고정님 권윤진 김경현 니콜라 변혜정 서동언 안형경 이명선 이미경 이병규 장필화 정경자

난생 처음 자장면을 사준 사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

아파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가족들 걱정할까 내색도 안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산타였던 사람, 작은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

힘들다는 말을 안하는 사람, 가장 늦게 서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

자식이 보낸 편지를 간직하는 사람, 그 편지를 백번씩 읽어보는 사람

딸이 팔짱 껴 때 행복했던 사람, 사위에게 부탁하며 눈물 짓던 사람

속에 없는 말은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가끔은 손해 보는 사람

말 한마디로 용기를 심어 주는 사람, 언제나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사람

세상에 단 한명 뿐인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Bravo your Life!**

아버지, 사랑합니다 – 삼성생명이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삼성생명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베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4만 1천여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부설〈열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상 담 ☎ (02) 338-5801~2 ■ 인터넷 상담: [ksvrc@chol.com](mailto:ksvrc@chol.com)
- 열림터 ☎ (02) 338-3562 FAX : 338-1007 ■ 하 담 ☎ (02) 338-3563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전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 (02) 338-2890~2

- 이사장 김삼화 ■ 이사 김삼화 문해란 이명숙 이미경 이백수 이유정 장철우 최영애 최보원 표창원 홍순기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승 ■ 자문위원 · 교육 교사/김성애 백영애 교육학/김인수 서영곤 정유성 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저널리스트/박미라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조국 김엘림 변호사/강기원 고미진 고순례 김삼화 김의창 김재련 남성렬 박성호 박찬운 손명숙 윤영규 이명숙 이백수 이유정 이지선 이창윤 이향아 임종인 장경호 장철우 정성광 정연순 천정환 최은순 최현희 경찰/김강자 이금행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상담심리학/권해수 김순진 김정규 이윤로 이장호 이해성 장연집 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이원숙 한인영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정영숙 법의학/강신동 권일훈 문국진 서충석 이경룡 이윤성 최영식 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김홍배 문영규 민웅기 박금자 박종민 손인숙 안명숙 윤경 윤연정 이길여 이신애 이옥수 임용택 정경원 조삼현 조정현 최보원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신의진 최보문 임태식 외과/오세민 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섭 임상병리학/강정옥 문해란 정신과/김광일 김병후 김정현 박수용 박진생 양창순 유재혁 이해현 이호석 윤영민 이수경 전지홍 조맹제 최진숙 치과/이상업 한의학/강명자 김영관 김영선 김효선 서은미 이은미 호흡기내과/안철민 · 재정 포리랜서/여난영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윤영민 · 흥보출판 신문방송학/김응숙 최선열 여성학/박혜란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건 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강명구 김양희 김훈순 원용진 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국제협력/김선영 김사강 김사라 니콜라 박선미 안연선 이성숙 정경자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변혜정 사회복지학/권진숙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이재경 장필화 조주현 임순영 차옥덕 이경미 김지혜 철학/이상화 정대현 이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선욱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 소장 이미경